

## ■ 독일 - 연방 프라이버시 커미셔너(Bundesbeauftragter für den Datenschutz)

바로가기 ⇒ <http://www.bfd.bund.de/index.html>

메일보내기 ⇒ [poststelle@bfd.bund.de](mailto:poststelle@bfd.bund.de)



독일은 세계 최초로 제정된 1970년 Hessen 주의 정보보호법과 1974년 Rheinland-Pfalz 주의 정보남용금지법에 이어, 1977년 연방정보보호법(Bundesdatenschutzgesetz)을 제정함으로써 일찍부터 개인정보보호법체계를 마련한 국가이다. 독일은 현재 연방과 주 차원에서 각각 개인정보보호법이 마련되어 있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기구들이 설치되어 활동 중이다. 현재 16개 독일 주의 개인정보보호기구는 주 공공기관의 정보처리에 대해 규율하고 있다. 또한 독일에서는 일부 영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민간 감독기구를 각 주마다 설치하여 사적 영역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관리·감독케 하고 있다. 그러나 베를린, 브레멘, 함부르크 등의 주에서는 주 개인정보보호기구가 민간부문에 대해서도 함께 규율하고 있다.

### 1. 연방 프라이버시 커미셔너의 지위

연방 프라이버시 커미셔너는 1977년 연방정보보호법 및 1996년 전자통신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정기구이다. 연방커미셔너는 연방정부의 제청에 따라 연방의회(하원)에서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선출되며, 선출된 자는 연방 대통령이 임명한다. 커미셔너는 선출 당시 35세 이상이어야 하며 임기는 5년이고 1회에 한하여 재임할 수 있다. 연방 프라이버시 커미셔너는 연방 내무부 소속으로 연방 내무부장관의 행정관리상의 감독을 받으며, 예산도 연방 내무부에서 지원받는다. 그러나 커미셔너는 공무원의 자격을 가진 자로 법률에 따라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받고 있다. 현재 활동중인 연방 프라이버시 커미셔너는 Joachim Jacob이다.

### 2. 관장법률

독일의 연방 프라이버시 커미셔너가 관장하는 대표적인 법률은 바로 1977년 연방정보보호법이다. 동법은 1977년 제정된 이후, 1990년에 새롭게 개편(BGB1.I 1990 S.2954)되었고 1994년과 1997년, 2001년에 각각 개정된 바 있다. 또한 최종 개정은 EU 정보보호지침에 맞추기 위해 최종적으로 2002년 이루어졌다. 동법의 일반적인 목적은 '개인관련정보의 처리로 인한 개인의 권리침해에 대하여 당해 개인을 보호'하는 것이다. 동법은 연방 및 주의 공공기관과 비공공부문에 의해 수집된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처리에 대해 적용된다. 또한 커미셔너는 1996년 제정된 정보·통신서비스에 관한 기본조건의 규율에 관한 법률(Gesetz zur Regelung der

Rahmen- bedingungen für Information-und Kommunikationsdienste)에 대해서도 관장하고 있다. 특히 동 법률 규정 중 제1편 전자통신서비스법(Teledienstegesetz: TDG)과 제2편 전자통신서비스정보보호법(Teledienstedatenschutzgesetz: TDDSG)이 특히 개인정보와 관련이 있다. 한편, 연방개인정보보호법은 통신서비스와 관련한 전자통신서비스정보보호법이 적용되는 범위에서는 적용이 제한된다. 이 외의 관련법률로는 조세법(Abgabenordnung), 건축법(Baugesetzbuch), 우편법(Postgesetz), 사회법(Sozialgesetzbuch)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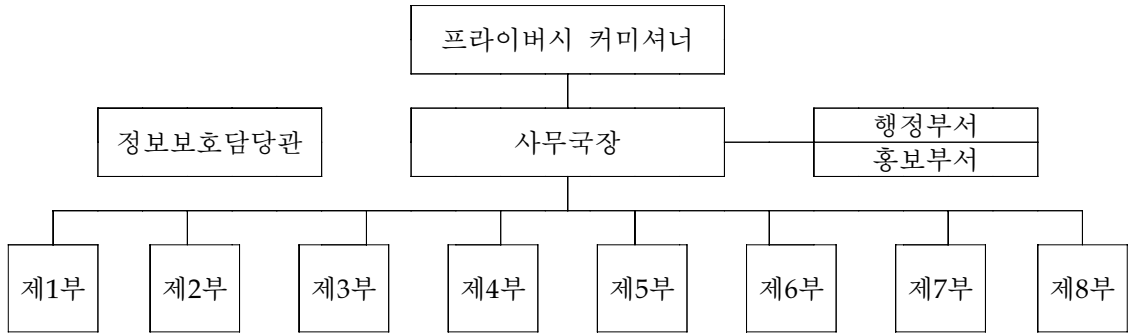
### 3. 업무범위

연방 프라이버시 커미셔너는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사용과 관련하여 연방정보보호법이 적용되는 범위 내에서 활동하나, 주의 개인정보보호기구와 각 주에서 설립한 민간 정보보호 감독기구의 업무범위를 제외한 범위에서 활동한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연방 프라이버시 커미셔너는 연방정부 및 공공기관, 연방정부 산하단체, 연방법원, 여러 주에 걸쳐 사업하는 우편이나 통신업자 등에 대해서만 관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사회정보의 보호와 관련해서도 연방 커미셔너가 개입하고 있고 환자, 사고, 연금보험, 실직보험과 관련된 정보영역에 대해서도 관할하는 등 점차 그 업무범위가 확장되고 있다. 즉, 독일에서는 연방과 주의 업무영역이 구분되어 각자 독립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특히 연방정보보호법은 공공과 민간부문 모두에 적용되는 기본법이나 개인정보보호기구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분리되어 설치·운영되고 있다.

### 4. 조직구성

연방 프라이버시 커미셔너는 커미셔너 1인과 이를 지원하는 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은 약 70여명이다. 사무국은 총 8부로 나누어져 있는 바, 제1부는 유럽 등과의 국제협력 및 커미셔너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영역에서의 정보보호업무를 담당하며, 제2부는 법제·금융·노동행정·국방·민원서비스·외국인 대상업무에 대한 정보보호 감독업무를 행하고, 제3부는 사회복지 문제 및 정보보호협력업무를 행한다. 또한 제4부는 경제·의료 서비스·교통·우편·통계관련 개인정보보호업무를 담당하며, 제5부는 경찰·방송 업무 담당, 제6부는 기술안전정보보호 및 정보기술과 정보안전을 담당한다. 제7부는 일반적인 내무행정과 형법 및 신고제 담당업무를 행하며, 제8부는 통신·전화 및 의료와 관련된 정보 보호업무를 담당한다. 이 외 ZA부(Zentrale Aufgaben)는 사무국의 인사행정과 예산수립 및 집행업무를 담당하며, 홍보부(Pressearbeit)는 미디어와의 집중적인 접촉과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동 조직에는 조직 내부의 개인정보보호업무를 담당하는 정보 보호 담당관이 임명되어 있다.

<독일 연방 프라이버시 커미셔너 조직도>



5. 주요기능

독일의 연방 프라이버시 커미셔너는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처리하는 연방정부 및 연방 공공기관에 대하여 규제하고 관리·감독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따라서 연방정부 및 공공기관을 상대로 제기된 불만이나 민원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하고, 관할 영역에 해당되는 기관들의 개인정보처리현황을 점검하고 조사·감독하는 기능을 주로 하고 있다. 이 외에도 연방 프라이버시 커미셔너는 주의 개인정보보호기구를 비롯하여 해외 기구들과 협력을 유지하며, 관할범위의 개인정보처리자를 등록하는 등록부를 유지·관리한다. 연방 프라이버시 커미셔너의 주요 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방 프라이버시 커미셔너의 주요기능>

구분	주요기능
정보처리 등록·신고	·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등록부 유지·관리
법규준수 조사·감독	· 민원제기시 연방정부 등의 정보보호법 준수실태 모니터링 · 의회 또는 연방정부의 요청시 정보보호시스템에 대하여 조사 ·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권고
접근권·정정권 보장	· 공공기관 및 단체에 정보공개명령권 행사
피해구제	· 연방정부 등을 상대로 한 각종 개인정보침해신고접수 · 자료제출요구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한 사실조사 · 침해금지, 원상회복 등 침해행위자에 대한 권고
자문·상담 등 정보제공	· 개인정보보호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정보제공
입법 및 정책 자문	· 정부에 대하여 정책자문 · 매2년마다 활동보고서 작성 및 연방의회 보고 · 의회 및 정부 요구시 의견서, 조사서,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입법에 대한 자문 및 권고
교육·홍보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 실시 · 언론보도자료 배포 및 각종 위원회 발간물 작성
국내외 협력	· 주 개인정보보호기구 및 민간영역의 감독기구와의 협력 · 국제협력 강화